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765
----------	-----

2019. 6. 20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정재웅·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8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4.23.)으로 임대 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 지정하는 축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이 1천제곱미터로 완화되어 변화된 기준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 현행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승강장의 경계는 시민들이 알기 어렵고 승강장의 형태에 따라 실제 생활권과 상이하게 설정되는

등 역세권의 개념과 실제 범위가 달리 적용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에,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6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을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신 설></p> <p>2. “청년주택”이란 <u>서울특별시</u> (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p> <p>3.~ 5. (생략)</p> <p>6.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u>2천 제곱미터</u>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p> <p>1. -----.</p> <p>----- .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u>서울특별시</u>(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2. “청년주택”이란 <u>시장</u>,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p> <p>3.~ 5. (현행과 같음)</p> <p>6. ----- 1 <u>천제곱미터</u> -----.</p>